

『서울특별시 안전취약계층 주거환경 및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
그리고 선배 · 동료 의원님 여러분 !
더불어민주당 노원 제3선거구 봉양순 의원입니다.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에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안전취약계층 주거환경 및 안전관리 지원
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 조례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조례 제정의 취지와 조례 제
정을 준비해온 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민생실천위원회는 2018년 11월 9일 발생한 ‘종로 고
시원 화재 참사’ 이 후 고시원과 같은 주거안전 취약거
처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지원 사업 예산 15억, 주거취약계층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예산 4억 8천만원을 확보하는 등 실효적인 지원 사업을 만들었고,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 지난 2월, 민생실천위원회에서는 동자동 쪽방촌을 방문해 주거취약거처에서 고통 받고 있는 서울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고, 그 자리에서 여러 시민단체들과 함께 준비해 온 본 조례안을 발표하면서 서울시의 심각한 주거 빈곤 문제와 그에 따른 안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 본 조례안은 고시원, 쪽방촌과 같은 주거안전 취약거처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민생실천위원회의 첫 성과이며, 동시에 서울시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특화된 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지방자치 활성화 차원의 성과로 기록될 것입니다.

- 이상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거안전 취약거처, 주거안전 취약계층, 안전관리의 정의를 규정(안 제2조)

둘째,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안전 취약거처의 안전관리 증진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안 제4조)

셋째, 주거안전 취약거처 및 주거안전 취약계층에 대하여 화재 예방 및 진화용구, 소방시설의 설치, 방화벽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6조)

넷째, 주거안전 취약거처 또는 주거안전 취약계층이 밀집한 지역에 의용소방대를 배치(안 제7조)

-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출한 민생실천위원회의 조례 제정 취지를 헤아려주시고, 심화되고 있는 서울시의 주거 빈곤과 주거취약계층의 안전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이상 조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